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정 진도에 다다른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등〉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31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3
1. 일정 진도에 다다른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등	3
※ 참고자료: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

Ⅲ. 검토의견

1. 일정 진도에 다다른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등

가. 개정안 요지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신설).
-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과업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안 제50조제5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생략)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 -----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50조¹⁾에 따르면 국가기관등²⁾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시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며,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제도의 목적, 주체,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과업내용을 명확히 하여 SW기업에게 과업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즉 잦은 과업변경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다.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SW기업의 수익 저하, 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등 SW산업의 발전이 저해됨에 따라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 과업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이 위원을 임명·위촉하여 구성³⁾한 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업내용 등을 확정함.
-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사유 적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 등 요구사항 전반을 검토함⁴⁾.

○ 개정안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일정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3) SW분야 교수, SW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 SW기술자 등을 임명·위촉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4) 참고자료 참조

□ 일정 진도에 다른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 안 제50조제4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규정임.
- 이는 현행법상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이 일정 진도에 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권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국가기관등의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발주자 간 이견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나 긴급한 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지연 및 행정적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으로, ‘수정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는 설계 공정 이후의 과업심의 의무화는 기존 과업변경 심의와 중복이며 과도한 이중규제로, 행정력 낭비 및 사업지연 초래가 우려되어 재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동해시는 매년 반복되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절차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산업은행은 일괄적으로 일정 단계에서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의 의무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일정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 절차 간소화

- 안 제50조제5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을 대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⁵⁾(과기정통부고시)에서 일정한 사업에 대해 과업심의위원

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회 위원 2인 이상이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고시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간소화 심의 또한 위원수당 발생, 행정절차 소요 등에 따른 예산 낭비 및 사업 발주 지연이 불필요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과업 내용이 명확하고 변경 가능성이 작은 사업 등 과업심의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뿐만 아니라 과업심의 생략도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수정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
-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 6.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 참고자료: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

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
-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이 개최하는 다른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228